

서울고등법원 2022. 4. 21 선고 2021나20161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

담당변호사 서가희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

담당변호사 김광호

변 론 종 결 2022. 3. 17.
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. 4. 13. 선고 2019가합59653 판결

주 문

1.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29.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,602,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 A에게 222,602,7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29. 체결된 매매계약을 111,438,3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 B에게 111,438,3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원고 A

주문 제1의 가, 나항과 같다.

나. 원고 B

주문 제2의 가, 나항과 같다.

[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.]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, 다음 제2항에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,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가. 제1심판결 중 4면 2행의 “주식회사 Q” 부분 ⇨ “주식회사 F”

나. 제1심판결 중 5면 6행부터 12면 아래에서 5행까지의 각 “이 법원의” 부분

⇨ 모두 “제1심법원의”

다. 제1심판결 중 11면 1행의 “277,613,913원” 부분 ⇨ “277,633,913원”

2.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들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및 D의 사해행위 부분

1) 피고의 주장 요지

원고들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각서(갑4호증)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고,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 중 M의 D에 대한 채권이 이미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(갑12호증의 1, 2), 원고들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역시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

또한 D은 2019. 1. 29. W에게 V 토지에 관하여 2019. 1. 2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(갑14호증의 1), 2019. 2. 11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2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(갑5, 20, 21호증), 만일 V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후에 비로소 체결된 것이라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닐 여지가 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2) 판단

가)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, ① 원고들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인수채무금 100,000,000원 및 50,000,000원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되고, ② 이 사건 매매계약과 V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같은 날에 D이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 전부가 매도된 이상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또한 ③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) 다만 원고들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친다.

(1) 제1심판결 중 6면 7행부터 11행까지 부분

⇒ “따라서 D에 대하여 원고 A은 인수채무금 100,000,000원, 원고 B은 인수채무금 50,000,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,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.”

(2) 제1심판결 중 12면 아래에서 2~4행의 “D은 변론종결 당시 원고 A에 대하여 194,186,389원, 원고 B에 대하여 97,195,934원의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,” 부분

⇒ “D은 원고 A에 대하여 인수채무금 100,000,000원, 원고 B에 대하여 인수채무금 50,000,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”

나.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부분

1) 피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.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.

2) 판단

가) 그러나 D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,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데, 제1심의 변론 결과(을2, 4~6호증, 을3호증의 1~5, 을7호증의 1, 2)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(을9호증의 1~10, 을10~17호증, 을18호증의 1, 2)을 보태어 보아도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나)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, 제1심판결 중 12면 1행의 “그런데”부터 6행의 “만족을 얻었다.”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그런데 피고는 2017. 12. 15. 그 대표이사인 AA으로 하여금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

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AA, 채무자 D, 채권최고액 6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고(갑5, 6, 20호증), 그 후 2019. 2. 11. D의 Z조합에 대한 대출금 277,633,913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서(을7호증의 1, 2, 제1심법원의 Z조합에 대한 2021. 1. 22.자 사실조회 결과),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1,123,000,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(을5, 6호증).

결국 AA과 피고는 AA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위 매매대금 1,123,000,000원에서 위 대위변제액 277,633,913원을 공제한 나머지 845,366,087원(= 1,123,000,000원 - 277,633,913원)을 회수하게 되었고, 이는 당초 AA이 가졌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것이다.

다. 소결

1)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원고들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.

2) 다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쳐 쓴다.

가)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, 제1심판결 중 8면 6행부터 9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즉 원고 A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액수는, ① D이 E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

400,000,000원 중 원고 A이 채권을 양수한 금액인 100,000,000원과 ② 이에 대하여 원고 A이

구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양수 다음날인 2017. 4. 22.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2. 3.

17.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2,602,739원[=

100,000,000원 × (4 + 330/365)년 × 25%,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]의 합계인

222,602,739원(= ① 100,000,000원 + ② 122,602,739원)이 된다.

또한 원고 B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액수는, ③ D이 E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

400,000,000원 중 원고 B이 채권을 양수한 금액인 50,000,000원과 ④ 이에 대하여 원고 B이

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. 4. 18.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2. 3. 17.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,438,356원[= $50,000,000\text{원} \times (4 + 334/365)\text{년} \times 25\%$] $\times$ 의 합계인 111,438,356원(= ③ 50,000,000원 + ④ 61,438,356원)이 된다.

따라서 원고들은 위 각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.

나)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, 제1심판결 중 13면 아래에서 5행부터 14면 아래에서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,123,000,000원에 매수하였고, 그 매매대금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 334,041,095원(= 222,602,739원 + 111,438,356원)을 훨씬 초과하므로,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.

3) 이에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 A의 피보전채권액인 222,602,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가액배상금 222,602,7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또한 원고 B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 B의 피보전채권액인 111,438,3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가액배상금 111,438,3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그런데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확장 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지만, 원고들의 청구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추가로 인용하여야 하므로,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,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윤희, 판사 최현중, 판사 방웅환

목 록

1. 경기 가평군 AC 임야 1,429㎡
2. 경기 가평군 AS 도로 1,149㎡ 중 1,495/7,277 지분. 끝.

